【붙임 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제2024-1호

2024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일반직 직원 채용시험 공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함께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 3. 28.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직종과 인원

직종	직렬	직급	직류 직무분야		선발 예정인원	비고
합계					19명	
	행정	7급	기록물	행정 및 기록물 관리업무	1명	<mark>경력경쟁</mark> (일반)
	행정	9급	행정①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 전반	3명	공개경쟁 (청년)
	행정	9급	행정②	행정 및 홍보·마케팅업무	1명	공개경쟁 (일반)
	기술	9급	기계	시설물 관리 및 기계업무	3명	공개경쟁 <mark>(청년)</mark>
 일반직	기술	9급	전기	시설물 관리 및 전기업무	4명	
207 	기술	9급	시설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2명	
	기술	9급	토목	시설물 관리, 개발사업 및 토목분야 업무	2명	공개경쟁
	기술	9급	안전	시설물 관리 및 안전업무	1명	(일반)
	전문	9급	청소년	청소년 사업 등 기획·행정·운영 전반	1명	
	전문	9급	스포츠	체육시설 기획 및 종합유지관리 업무	1명	

※ 기술직은 자원순환시설에 배치될 경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저촉이 되지 아니한 자 - (발생)

나.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및 거주지

직종	직렬	직급	직류	응 시 연 령	거 주 지
70	72	718	Ξπ	(공고일 현재 기준)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
	행정	7급	기록물	만 18세 이상 (단, 정년 만 60세 범위 내)	지역제한 없음
	행정	9급	행정①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거주자
	행정	9급	행정②	만 18세 이상 (단, 정년 만 60세 범위 내)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거주자
	기술	9급	기계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거주자
일반직	기술	9급	전기	만 18세 이상 (단, 정년 만 60세 범위 내)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거주자
	기술	9급	시설	만 18세 이상 (단, 정년 만 60세 범위 내)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거주자
	기술	9급	토목	만 18세 이상 (단, 정년 만 60세 범위 내)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거주자
	기술	9급	안전	만 18세 이상 (단, 정년 만 60세 범위 내)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거주자
	전문	9급	청소년	만 18세 이상 (단, 정년 만 60세 범위 내)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거주자
	전문	9급	스포츠	만 18세 이상 (단, 정년 만 60세 범위 내)	지역제한 없음

※ 청년 고용: 공고일 현재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제한)
- 단,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의무복 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최고연령은 만 37세로 한정)
 -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마.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종	직렬	직류	직급	인원	자 격 요 건
	행정 기록물		7급	1	○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공고일 현재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또는 관련분야(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 후 공고일 현재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행정	행정①	9급	3	○ 자격 또는 경력 제한 없음
	행정	행정②	9급	1	○ 자격 또는 경력 제한 없음 ※단, 공고일 현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 부여
	기술	기계	9급	3	○ 공고일 현재 국가기술자격 아래 해당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해당자격증: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승강기, 자동차정비
일반직	기술	전기	9급	4	○ 공고일 현재 국가기술자격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술	시설	9급	2	○ 공고일 현재 국가기술자격 건축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술	토목	9급	2	○ 공고일 현재 국가기술자격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술	인전	9급	1	○ 공고일 현재 국가기술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문	청소년	9급	1	○ 공고일 현재 국가전문자격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문	<u> 스포츠</u>	9급	1	○ 공고일 현재 국가기술자격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 1.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자격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
 - 증빙서류 사실여부 조회결과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취소** 됨
 - 2. 모든 직종, 직렬에 대하여 이중 응시는 불가함
 - 3. 기사 이상 자격증은 가산 적용함(기계/전기/시설/토목/안전)
 - 4. 상기 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자격증 명칭 변경 등 상기 자격증의 연혁 자격증은 인정)

3 시험방법 (블라인드 채용 기반)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심사

나.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 서류전형 합격자

구분	응시	시험과목	배 점	비고		
공통	일 반직 (행정/기술/전문)	직업기초능력 (40문항)	100점	* 매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행정(행정)①	행정(20문항)				
	행정(행정)② 홍보미케팅(20문항)			<u>합격</u>		
	기술(기계)	기계(20문항)		* 선발예정인원 3배수 범위내		
전공 (1과목)	기술(전기)	전기(20문항)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기술(시설)	건축(20문항)	100점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은		
	기술(토목)	기술(토목) 토목(20문항)		필수과목		
	기술(안전)	안전(20문항)		* 전공과목은 응시직류별 선택과목		
	전문(청소년)	전문(청소년) 청소년(20문항)		* 1인당 2과목 응시		
	전문(스포츠)	스포츠(20문항)		(직업기초능력, 전공)		

- ※ NCS기반 채용전형으로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 ※ 경력경쟁 채용인 행정7급(기록물관리)은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O 전공시험 출제범위

응시분야	시험과목	출제범위	비고
전 직렬	직업기초능력(40문항)	NCS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 전반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조직이해능력/수리능력/ 정보능력/직업능력/기술능력/자기개발능력	필수과목
행정(행정)	행정(20문항)	행정학	
행정(행정)	홍보마케팅(20문항)	홍보마케팅론	
기술(기계)	기계(20문항)	기계일반, 기계설계	
기술(전기)	전기(20문항)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술(시설)	건축(20문항)	건축일반, 건축설비	
기술(토목)	토목(20문항)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기술(안전)	안전(20문항)	산업안전개론	
전문(청소년)	청소년(20문항)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활동	
전문(스포츠)	스포츠(20문항)	스포츠경영, 스포츠시설	

다. 인성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 행정(기록물) 응시자 대상으로 면접 전 시험 실시

※ 인성검사 미 응시자는 면접 응시자격 미부여

라.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평가 전형요소(배점 : 총 15점 각 전형요소별 3점)
 - ①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③ 의사발표의 정확·논리성 ④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평균 10점 이상 합격. 다만, 시험위원 과반수 이상이 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 평정 시 불합격)

※ 상 : 3.0점 ~ 2.1점, 중 : 2.0점 ~ 1.1점, 하 : 1.0점 ~ 0점

마. 최종합격자 결정 :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필기성적 50% + 면접성적 50% 반영

- ※ 면접배점은 15점이므로 면접 획득 성적을 100점으로 환산 후 50% 반영
- ※ 최종 합격자 결정에 있어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청년의무고용대상자 순으로 결정함
- 바.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함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워서 접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4. 8.(월) 09:00 ~ 4. 17.(수) 18:00 ※24시간 접수하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방법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geojeciviljobs.co.kr/)
비고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블라인드 채용」시행에 따라 합격 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시기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mark>온라인 작성</mark> 및 등록)	1. 응시원서 - 온라인 작성 2. 자기소개서- 온라인 작성 3.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반드시 기재) 1부 - 청년고용 및 거주지 확인용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필기시험 신분 확인용(사진 부착) 5. 시험 가산과 관련한 자격증 사본 1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변호사, 토지평가사 ·채용 직렬 관련(기계·전기·시설·토목안전)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행정② 응시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포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필기시험 가산적용 불가함 6.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1부 7. 경력증명서 1부[행정(기록물) 응시자에 한함]

※ 그 외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임용 등록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내용과 다른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비고
채용공고	2024. 3. 28.(목) ~ 4. 17.(수)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원서접수(인터넷 접수)	2024. 4. 8.(월) 09:00 ~ 4. 17.(수) 18:00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와 필기시험 안내공고	2024. 4. 24.(수)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필기시험	2024. 5. 4.(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 장소공고	2024. 5. 8.(수)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인성검사	2024. 5. 9.(목) ~ 5. 11.(토)	필기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면 접 시 험	2024. 5. 14.(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24. 5. 24.(금)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고 재공고 사유 및 재공고 일정은 통합채용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구분	자 격 증	가산점수	비고
기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가산점수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기준)	<국가유공자법제31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할 수 없다. 단,응시인원이 선발예 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감정사, 기술사, 변호사, 토지평가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당해 직종에 한하여
등별 ¹ 가점	 기술직(기계·전기·시설·토목·안전) 지원자 중 해당 분야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행정직(행정②) 지원자 중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1인 1종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종만 적용

※ 가산점 합산: 기본가점 + 특별가점(구분된 동일가점 범위 내에서는 중복 적용하지 않음)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를 못하고 작성 중인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나. 이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cleaneye.go.kr)에 공고합니다.
- 다. 응시원서 작성 시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료 기재사항에 대한 허위·착오 기재·누락 및 응시자와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합니다. (단, 최종합격자는 제외).

- 마.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나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 순번으로 추가선발 할 수 있으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합니다.
- 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취업규정에 따라 근무를 합니다.
- 아. 우리 공사가 정하는 채용신체검사(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결격사유 발생 시채용될 수 없습니다.
- 자.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신청절차 및 방법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을 참고 바랍니다.
- 차. 채용비리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단계로 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발생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채용에 관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가 입사 이후 적발 시 징계해고 또는 직권 면직 처리)
- 카. 우리 공사 선발예정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인사총무부로 문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055-639-8105 / 055-639-8107)

〈별첨〉

□ 관련근거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1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2.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3.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면직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